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0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장겸 · 박충권 · 박덕흠
서천호 · 조정훈 · 엄태영
박정훈 · 추경호 · 김재섭
이인선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제

8조 제1항 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제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공급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산에너지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기의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은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 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를 말한다)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력거래의 구체적인 절차, 승인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카.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u>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u>
3. ~ 10. (생략)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3. ~ 10. (현행과 같음)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비수도권 인공지능 데
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공급 특
례)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에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분산에너지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기사업법」 제31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시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
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기의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은 발
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
터를 운영하는 자가 개별적으
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 또는 인공지능 데
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인
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전기사
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
기설비 및 같은 조 제16호의2
에 따른 전선로를 말한다)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전력거래의 구체적인 절차,
승인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